# 평가세칙

제 정 2007. 1. 8
개 정(1) 2008. 6. 26
개 정(2) 2014. 5. 12
개 정(3) 2015. 2. 28
개 정(4) 2015. 10. 1
개 정(5) 2016. 4. 29
개 정(6) 2017. 7. 7
개 정(7) 2018. 12. 12
개 정(8) 2021. 1. 28
개 정(9) 2021. 12. 20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직원의 역량과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급여, 승진, 이 동 및 육성 등 인사전반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역량평가라 함은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, 관리자의 비즈니스 경쟁우위 확보 및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리더십역량에 대한 평가, 공사 핵심가치의 구현을 위해 직원이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.
- 2. 업적평가라 함은 조직의 전략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성과 지표를 설정하여, 이를 근거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다.
- 3. 평가자라 함은 평가대상자인 소속 직원의 역량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위자를 말한다.
- 4. 승인자라 함은 평가자의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점검하고 평가불일치 사항을 조정하며 평가자에 준하는 제반역할을 수행하는 평가자의 상위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①본 평가의 적용대상은 직원으로 한다. 그러나 부여된 직무 또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별정직원도 이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대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제4조(평가종류) 평가는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분하며, 별도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평가대상기간 및 평가시기) ①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- ②평가는 연1회 실시하며, 평가대상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차기년도 1월 중에 실시하되, 사장은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  - ③다면평가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평가단위 및 평가군) 평가는 부문, 본부, 부서 및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, 결과 집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평가군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7조(평가절차)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.
  - 1. 역량과 행동지표,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수립
  - 2. 평가대상자의 본인평가
  - 3. 평가면담
  - 4. 평가자의 평가
  - 5. 승인자의 평가자 평가에 대한 확인 및 조정
  - 6. 승인
- 제8조(평가항목 및 비율) ①역량평가의 평가항목 및 비율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  - ②업적평가의 경우에는 공사 사업계획에 따라 연초에 결정된다.
  - 직원의 개인목표는 공사 전략, 핵심성과지표 및 부서목표에 맞추어 설정한다.
  - 목표설정은 구체적이고, 측정가능하며, 사업목표와 연계하여, 실현 가능한 목 표를, 달성기한을 명시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설정한다.
  - 목표항목별 가중치는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가 협의하여 정하되 그 합계는 100%로 한다.
  - 경영방침의 변경, 환경 변화로 인하여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대상 자는 평가자와 합의하여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.
  - 전항 이외에 직원이 이동, 승진 등에 의하여 목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새로운 평가자와 협의하여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.
  - ③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등급점수는 아래와 같다.
  -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6단계로 평가(S등급, A등급, B등급, C등급, D

등급, E등급)하되, 기대치를 달성하면 B등급을 부여한다.

항목등급	S	A	В	С	D	Е
등급점수	100	90	80	70	60	50

제9조(평가자 및 승인자) 평가자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. 다만 공사의 사정으로 평가자 및 승인자를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평가대상자	평가자		승인자	
부서장	1차	본부장	사장	
	2차	부문장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
부서원	1차	부서장	부문장	
	2차	본부장	<b>十七</b> 多	

※ 감사부서의 경우에는 감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0조(평가교육) 인사담당부서장은 연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가자의 책임) ①평가자는 실제 직무수행 중에 나타난 역량 및 업적을 근 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②평가자는 중간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 상황 및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③공정한 평가 및 객관적인 평가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 관리 면담여부, 평가 및 조정결과에 대한 피드백, 평가설명의 충실도 등에 대해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항목 선정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통해 직원의견을 적극 반영한다.

④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결여 등 부서내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2조(승인자의 책임) ①승인자는 평가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승인자는 평가내용의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와

협의하여 평가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.

- ③승인자는 평가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평가자에 준하는 제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④단,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직원에 대해 승인자의 승인이 완료된 평가결과라 할 지라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.
- 1. 탁월한 창의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업무의 발전에 공헌한 직원
- 2.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높인 직원
- 3. 공사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
- 4. 기타 특별한 업무수행으로 공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거나 공사 경영상의 활동에 반하는 행동을 한 직원
- 제13조(이동직원의 평가 등) ①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각각 평가하며, 필요시 평가주관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간 협의를 통해 평가자를 확정할 수 있다.
  - ②평가기간 중 평가자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전임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현소속 평가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  - ③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한다.
- **제14조(평가등급의 산정)** ①역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역량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  - 1. 역량평가점수산정 :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평가점수를 산정한 후, 이를 합산하여 역량평가총점을 산정한다.
  - 2. 역량평가등급 산정

역량평가점수합계	역량평가등급
95이상	S등급
90이상 95미만	A+등급
85이상 90미만	A 등급
80이상 85미만	B+등급
75이상 80미만	B 등급
70이상 75미만	C+등급
65이상 70미만	C 등급
60이상 65미만	D+등급
60미만	D 등급

- 부서장은 부서원의 상대적 역량 수준을 감안하여 A+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3

등급에 걸쳐 부서원의 역량평가점수 또는 등급을 평정해야 한다. 단, 부서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사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.

- ②업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업적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- 1. 업적평가점수산정 : 각 개별 지표별 등급점수 또는 계량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표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업적평가총점을 산정한다.
- 2. 부서 개인업적평가 점수의 평균을 표준점수로 조정하되, 징계 등 특별하게 인사관리 처분을 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3. 업적평가등급 산정
- 업적평가등급을 9단계(S,A<sup>+</sup>,A,B<sup>+</sup>,B,C<sup>+</sup>,C,D<sup>+</sup>,D)로 하되, 업적급 배분시 전사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업적평가총점순으로 특정등급 인원이 전체의 50%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% 이상이 되도록 평가군별 5등급 정규분포로 인원을 배분한다. 다만, 전사평가 점수 수준에 따라 사장이 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업적평가점수합계	업적평가등급
95이상	S등급
90이상 95미만	A+등급
85이상 90미만	A 등급
80이상 85미만	B+등급
75이상 80미만	B 등급
70이상 75미만	C+등급
65이상 70미만	C 등급
60이상 65미만	D+등급
60미만	D 등급

- 부서장은 부서원의 상대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A+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3등급에 걸쳐 부서원의 업적평가점수 또는 등급을 평정해야 한다. 단, 부서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사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.
- ③상대적 기여도에 따른 등급배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승인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.
- ④인사담당부서는 승인자간 평가결과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승인자간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⑤인사담당부서는 부서간 평가결과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원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의2(평가점수의 가감) ①인사담당부서는 평가 대상기간 중의 TF 활동 실적,

부서평가 실적, 교육 점수 등을 평가 결과에 가점 또는 감점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.

②가점 또는 감점 항목의 종류 및 적용 방법 등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**제15조(종합평가등급의 산정)** ①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한다.

1. 종합평가점수 산정 : 역량평가등급점수 × 직급별 역량평가 가중치 + 업적평가등급점수 × 직급별 업적평가 가중치

#### 2. 종합평가등급

- 종합평가등급을 9단계(S,A<sup>+</sup>,A,B<sup>+</sup>,B,C<sup>+</sup>,C,D<sup>+</sup>,D)로 하되, 기준급 인상시 종합평가총점순으로 특정등급 인원이 전체의 50%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% 이상이 되도록 평가군별 5등급 정규분포로 인원을 배분한다. 다만, 전사평가 점수 수준에따라 사장이 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종합평가점수구간	종합평가등급
95이상	S등급
90이상 95미만	A+등급
85이상 90미만	A 등급
80이상 85미만	B+등급
75이상 80미만	B 등급
70이상 75미만	C+등급
65이상 70미만	C 등급
60이상 65미만	D+등급
60미만	D 등급

②종합평가등급 산정 기준은 직급 및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, 상위 직급 및 운용직무는 업적평가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한다.

직급	<u>수</u>	용	비운용		
	역량평가	업적평가	역량평가	업적평가	
1급	-	100%	-	100%	
2급	30%	70%	40%	60%	
3급	40%	60%	50%	50%	
4급	50%	50%	60%	40%	
5급	60%	40%	70%	30%	
6급A·B	70%	30%	80%	20%	

- 제16조(평가결과의 공개)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. 그러나 평가대상 자 및 평가관련자는 평가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**제17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①평가결과는 보수, 승진, 이동, 육성 등에 반영하되,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.
  - ②종합평가결과가 2년 연속 D등급일 경우에는 업무성과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며,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  - ③종합평가결과가 3년 연속 D등급일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.
- 제18조(이의처리) 직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처리는 승인자의 조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한다.
- 제19조(이의처리절차) ① 승인자의 조정으로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이의신청 자는 승인자의 조정일(또는 서명일)로부터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.
  - ②조정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내용을 평가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  - ③평가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평가조정위원회) ①구성 :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담당부문장, 투자운용담당부문장, 리스크담당부문장, 준법감시인, 외부인사위원 2인 및 인사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  - ②회의소집 : 위원회는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인사담당부문장이 소집하거나, 인사담당부문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③심의 및 의결 : 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해당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점수 및 등급을 조정하고 의결한다.
  - ④의견청취 :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자, 평가자 또는 승 인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⑤구속력: 위원회의 결의는 평가에 관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평가대상자 및 평가관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- ⑥회의록 :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⑦의결사항의 통지 : 인사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에 평가대상자 및 평가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⑧기밀유지 : 위원은 심의 및 조정된 내용을 평가대상자 및 평가관련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